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2022년 11월 2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 I. 제안이유

-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기금 수정안을 함께 의결 받으려 하는 것임.

## II. 주요내용

- 2023년도 평창군 기금조성 규모는 총 7개 기금 24,63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75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기금조성 규모는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성액 <sup>㉠</sup>	2023년 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sup>㉡</sup> ( <sup>㉠</sup> + <sup>㉢</sup> - <sup>㉣</sup> )	증 감 <sup>㉤</sup> ( <sup>㉡</sup> - <sup>㉠</sup> )
		수입 <sup>㉢</sup>	지출 <sup>㉣</sup>		
합 계(7건)	25,808,891	4,673,176	5,847,831	24,634,236	△1,174,655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4,630,423	29,267	2,306,405	2,353,285	△2,277,138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1,000,000	330,007	0	11,330,007	330,007
평창군체육 진흥기금	2,937,432	1,040,598	1,100,000	2,878,030	△59,402
평창군자활기금	251,470	251,535	30,000	473,005	221,535
평창군재난 관리기금	971,875	813,053	800,000	984,928	13,053
평창군옥외 광고발전기금	153,965	25,051	0	179,016	25,051
평창군식품 진흥기금	129,723	32,649	34,422	127,950	△1,773
평창군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5,734,003	2,151,016	1,577,004	6,308,015	574,012

### Ⅲ. 기금개요

#### □ 기금조성 규모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개별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로 2023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4,63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75백만원** 감소

#### □ 기금운용계획 총괄

- 2023년도 수입·지출계획은 총 **25,982백만원**이며,
  - 수입은 전입금 4,050백만원, 보조금 22백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4,500백만원, 예치금 회수 16,809백만원, 이자수입 498백만원, 기타수입 103백만원 임.
  - 세출은 비용자성 사업비 3,516백만원, 융자성 사업비 25백만원 예치금 20,134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306백만원 임.

#### □ 기금별 운용계획

##### 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실)

- 설치목적: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융자(존속기한 2024.12.31.)
- 기금운용계획

##### ▶ 수입·지출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b>합 계</b>	<b>2,409,681</b>	<b>합 계</b>	<b>2,409,681</b>
예탁금원금회수	2,250,000	예치금	103,276
예치금회수	130,414	예수금원금상환	2,250,000
이자수입	29,267	예수금이자상환	56,405

- ▶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 **2,250백만원**,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130백만원**, 이자 수입 **3백만원**이며,
- ▶ 지출은 예치금 **108백만원**, 체육진흥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306백만원** 임.

나.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실)

○ 설치목적: 재정불균형 조정, 대규모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지방채 상환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한 안정적 재정운영  
(존속기한 2024.12.31.)

○ 기금운용계획

▶ 수입·지출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b>합 계</b>	<b>11,330,007</b>	<b>합 계</b>	<b>11,330,007</b>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	11,330,007
예치금회수	11,000,000	예수금원금상환	0
이자수입	330,007	예수금이자상환	0

- ▶ 수입은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11,000백만원, 이자 수입 330백만원이며,
- ▶ 지출은 예치금 11,330백만원 임.

다. 평창군체육진흥기금(올림픽체육과)

○ 설치목적 : 평창군 체육진흥 (존속기한 2023.10.16.)

○ 기금운용계획

▶ 수입·지출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b>합 계</b>	<b>2,978,030</b>	<b>합 계</b>	<b>2,978,030</b>
전입금	1,000,000	비용자성사업비	1,100,000
예탁금원금회수	1,000,000	예치금	1,878,030
예치금회수	937,432		
이자수입	40,598		

- ▶ 수입은 전입금 1,000백만원, 예탁금원금 회수 1,000백만원,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937백만원, 이자 수입 41백만원 임.
- ▶ 지출은 Happy700평창 전국바둑대회 60백만원, Happy700평창 강원도 볼링대회 20백만원, 회장기 전국 궁도대회 40백만원, 평창장사 씨름대회 200백만원,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200백만원, 평창군수기 전국 리틀 야구대회 100백만원,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180백만원, 강원일보 크레이지 골프대회 50백만원,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250백만원, 예치금 1,878백만원 임.

라. 평창군자활기금(복지정책과)

- 설치목적 :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 촉진(2022년 설치, 법정기금)
- 기금운용계획

▶ 수입·지출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b>합 계</b>	<b>251,535</b>	<b>합 계</b>	<b>503,005</b>
전입금	250,000	비용자성사업비	5,000
이자수입	1,535	융자성사업비	25,000
		예치금	473,005

- ▶ 수입은 전입금 250백만원, 이자수입 153만원이며,
- ▶ 지출은 사업자금대여 15백만원, 자활 성공수당 지원 4백만원, 자활 조성자금 대여 10백만원, 사회보험료 지원 1백만원, 예치금 473백만원 임.

마. 평창군재난관리기금(안전교통과)

- 설치목적 :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법정기금)
- 기금운용계획

▶ 수입·지출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b>합 계</b>	<b>1,784,928</b>	<b>합 계</b>	<b>1,784,928</b>
전입금	800,000	비용자성사업비	800,000
예치금회수	971,875	예치금	984,928
이자수입	13,053		

- ▶ 수입은 전입금 800백만원,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972백만원, 이자수입 13백만원이며,
- ▶ 지출은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350백만원, 응급복구 자재구입 100백만원, 재난·재해예방사업 100백만원, 부착제설기 구입 250백만원, 일반예치금

255백만원, 의무예치금 730백만원 임.

바.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도시과)

○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지원(법정기금)

○ 기금운용계획

▶ 수입·지출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b>합 계</b>	<b>179,016</b>	<b>합 계</b>	<b>179,016</b>
예치금회수	153,965	예치금	179,016
이자수입	1,975		
기타수입	23,076		

- ▶ 수입은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금) 154백만원, 신고 수수료 23백만원, 이자수입 2백만원이며,
- ▶ 지출은 예치금 179백만원 임.

사. 평창군식품진흥기금(보건정책과)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법정기금)

○ 기금운용계획

▶ 수입·지출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b>합 계</b>	<b>162,372</b>	<b>합 계</b>	<b>162,372</b>
보조금	22,000	비용자성사업비	34,422
예탁금원금회수	0	예치금	127,950
예치금회수	129,723		
이자수입	649		
기타수입	10,000		

- ▶ 수입은 보조금 22백만원,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130백만원, 이자수입 65만원, 과징금 10백만원 임.
- ▶ 지출은 지역대표 음식 홍보비 4백만원,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외 4개 사업에 26백만원 과징금 강원도 분할금 4백만원, 예치금 128백만원 임.

아.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농산물유통과)

- 설치목적 :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해당 가격 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존속기한 2024.12.31.)
- 기금운용계획
  - ▶ 수입·지출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항 목	지출액
<b>합 계</b>	<b>6,635,020</b>	<b>합 계</b>	<b>6,635,020</b>
전입금	2,000,000	비용자성사업비	1,577,004
예탁금원금회수	1,250,000	예치금	5,058,016
예치금회수	3,234,004		
이자수입	81,016		
기타수입	70,000		

- ▶ 수입은 전입금 2,000백만원, 예탁금원금 회수 1,250백만원,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3,234백만원, 이자수입 81백만원, 계통출하조직 출연금 70백만원이며,
- ▶ 지출은 농축산물 가격하락 보상금 1,577백만원, 예치금 5,058백만원 임.

IV. 수정예산

- 지난 2022년 11월 21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이후,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2022년 12월 2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음.
-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일반회계의 정부추경으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등 일반회계 재원 중 110억원을, 회계연도간의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대비 11,330백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음.

## V. 검토의견

- 2023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총 7개를 운용할 계획으로, 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175백만원이 감소한 24,634백만원 임.
- 2023년도말 조성액을 기금별로 보면
  - ▶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353백만원
  - ▶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1,330백만원
  - ▶ 평창군체육진흥기금 2,878백만원
  - ▶ 평창군자활기금 473백만원
  - ▶ 평창군재난관리기금 985백만원
  - ▶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179백만원
  - ▶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28백만원
  - ▶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6,308백만원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25,982백만원으로
  - ▶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16,809백만원(64.69%), 예탁금원금 회수가 4,500백만원 (17.32%), 전입금 4,050백만원(15.59%), 이자수입 498백만원(1.92%), 기타수입 103백만원(0.40%), 보조금 22백만원(0.08%) 이며,
  - ▶ 지출은 예치금이 20,134백만원(77.49%),
    - 자활성공수당지원 등 2건의 자활사업, HAPPY700 전국바둑대회 등 9건의 체육진흥사업, 으뜸음식점 지원 등 5건의 위생업소 개선사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농축산물 가격하락 보상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3,516백만원(13.53%)
    - 예수금원리금 상환이 2,306백만원(8.88%)
    - 자활 조성자금 대여를 위한 융자성 사업비가 25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 ▶ 체육진흥기금 조성목표액 50억원이나, 체육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을 보면 2021년도 3,333백만원, 2022년도 2,937백만원, 2023년도 2,878백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재원확보를 적극 추진 하여야 하며,
- ▶ 또한, 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존속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경우

- ▶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제3항 “군수는 차액 지원을 할 경우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에서 보면 해당연도 기금 총액은 연도말 기금총액을 뜻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발생할 수입을 합산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수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